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3495 |
|----------|------------|

제안년월일 : 2026년 3월 5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현행 조례와 유사한 개정 사항은 별도 조항 신설 없이 현행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며, 놀이환경 평가 결과의 시민 공개에 관한 사항은 개소별 설치 환경에 따라 객관적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고 해당 지역에 대한 평가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시민 의견 수렴과 그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항 신설 없이 현행 조례에 통합 규정함(안 제5조제7호)
- 놀이환경 평가 결과의 시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9조제3항)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호 중 “만든다”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안 제8조제3항 중 “안전사고의”를 “안전사고 예방 및”으로 한다.

안 제19조제3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p>제5조(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놀이환경은 어린이와 부모, 지역단체 등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만든다.</p> <p>3. ~ 5. (생 략)</p> <p><u>〈신 설〉</u></p> | <p>제5조(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 ----- -----.</p> <p>1. (현행과 같음)</p> <p>2. 놀이환경은 어린이와 부모, 지역단체 등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u>만든다</u>.</p> <p>3. ~ 5. (현행과 같음)</p> <p>6. <u>놀이환경은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u></p> | <p>제5조(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 ----- -----.</p> <p>1. (개정안과 같음)</p> <p>2. ----- ----- ----- ----- <u>만들고, 이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u></p> <p>3. ~ 5. (개정안과 같음)</p> <p>6. (개정안과 같음)</p> |

〈신 설〉

제8조(놀이환경 조성 사업) ①·② (생략)

〈신 설〉

제19조(놀이환경의 평가) ①·② (생략)

〈신 설〉

7. 놀이시설 이용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놀이환경 조성 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놀이시설 이용 중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9조(놀이환경의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놀이환경 조성 사업)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안전사고 예방 및 -----

-----.

제19조(놀이환경의 평가) ①·② (개정안과 같음)

〈삭 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만든다”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놀이환경은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놀이시설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놀이환경은 어린이와 부모, 지역단체 등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u>만든다</u>.</p> <p>3. ~ 5. (생 략)</p> <p><u><신 설></u></p> | <p>제5조(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p> <p>-----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만들고, 이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u></p> <p>3. ~ 5. (현행과 같음)</p> <p>6. <u>놀이환경은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u></p> |
| <p>제8조(놀이환경 조성 사업) ①·② (생 략)</p> <p><u><신 설></u></p> | <p>제8조(놀이환경 조성 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놀이시설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u></p> |